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전문공보관 이진호

전화 062-231-4332 / 팩스 0502-193-7661

2020. 11. 19.(목)

제 목

「광주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건 수사결과

- 총 22명 기소 [3명 구속 기소, 19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광주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광주 지역 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사건」을 '20. 6.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사한 결과,
- '17. 9.~'20. 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하여 125명으로 부터 약 81억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회장과 대표, 분양대행사 본부장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19. 11. 이중분양 행각을 파악하였음에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자신의 처가 2억원의 용역을 수주 받게 한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2명을 기소하였음
-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임

사건 개요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의 조합원 지위 이중분양 사기 등
 - A(69세, 업무대행사 회장, <u>구속</u>), B(47세, 업무대행사 대표, <u>구속</u>), C(55세, 분양대행사 본부장, 구속), D(34세, 분양대행사 팀장, 불구속) 등 총 21명
 - '17. 9.~'20. 6. **평택,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로 옮겨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빌미로 이중

¹⁾ 소형주택 소유자 내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나, 업무대행사의 사업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음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u>사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u>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편취 [사기] 등

- 2.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사기방조 및 배임수재 등
 - E[46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불구속(법원 영장기각)], A, B 등
 - E는 '19. 1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A, B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처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후 그중 3,000만원 수수 [사기방조, 배임수재] 등
 - A,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에게 2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배임증재]
 -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참조

Ⅱ 수사 경과

- '20. 6. 광주동부서, 이중분양 피해자 125명 고소장 접수
- '20. 6. 1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20. 6. 25. 피의자 A, B 구속영장 발부
 - ※ <u>수사지휘 단계부터 지역주택조합의 관련법령, 쟁점 및 법리에 관하여</u> 사경과 수시 연락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압수수색, 신병 처리함
- '20. 7. 2. 피의자 A, B 등 3명 사건송치
- '20. 7. 20. <u>피의자 A, B 구속 기소 등 총 3명 구공판</u>
- '20. 7. 22. 피의자 C 구속영장 발부
 - ※ 피의자 E에 대하여 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 7. 31. 피의자 C, E 등 4명 사건송치
- '20. 8. 18. 피의자 C 구속 기소, E 불구속 구공판 등 총 4명 구공판
 - *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사경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의자들 22명 송치 지휘

- '20. 9. 16. 피의자 D 등 분양대행사 직원 등 22명 사건송치
- '20. 11. 19. 피의자 D 등 6명 불구속 구공판, 9명 약식명령 청구 등

Ш

향후 계획

-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주범을 신병처리함으로써 다수의 분양 피해자들이 발생 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하였음
-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임□

[별지]

<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 >

순 번	피고인	지위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69세, <u>구속</u>)	업무대행사 회장	'17. 9.~'20. 6. 평택,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로 옮겨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빌미로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이미조합원 지위가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편취 [사기]	'20. 7. 20. 구속기소 ※ 공범 1명
2	B(47세, <u>구속</u>)	업무대행사 대표		불구속 구공판
3	C(55세, <u>구속</u>)	분양대행사 본부장		'20. 8. 18. 구속기소 ※ 공범 2명 불구속 구공판
4	D(34세, 불구속) 등 6명	분양대행사 팀장 등		'20. 11. 19. 불구속 구공판
5	F(24세, 불구속) 등 9명	분양대행사 팀원 등		'20. 11. 19. 약식명령 청구
6	E(46세, 불구속)	지역주택 조합장	'19. 1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A, B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처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수주받게 한 후 그중 3,000만원 수수[사기방조, 배임수재] '18. 7.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아파트실제 가액이 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 [업무상배임]	'20. 8. 18. 불구속 구공판 ※ 법원 구속영장 기각